


《2022. 1월 2차》
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2022년 신년화두 慎終謨始 (신종모시)

『맏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』

 ‘한 눈에 알아보는 청탁금지법’ 설명자료

청렴^韓수원

“부정청탁,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,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가 「청탁금지법」 제정의 목표”

관 련 내 용

(적용대상)

- 공공기관, 공직자, 공무수행사인(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)

(적용내용)

① 금품등 수수금지

-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이며,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넘는 금품등 수수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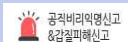
② 부정청탁금지

-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금지

③ 외부강의등

-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/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관련하여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
- 사례금 상한액
 -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: 40만원
 -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, 학교법인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: 100만원

부조리
신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 클릭, 케이휘슬 연결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